

학생 상별에 관한 규정

제정	:	2003. 3. 1.
개정	:	2008. 3. 1.
개정	:	2017. 4. 18.
개정	:	2018. 5. 21.
개정	:	2026. 2. 1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11장에 의거하여 학생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교의 학생의 포상과 징계에 관한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상별기록) 포상 및 징계사항은 학적부에 기재한다.

제2장 학생상별 위원회

제4조(설치·구성) ① 포상과 징계 등 학생상별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상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학지원처장과 기획관리처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3명 내외의 위원을 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교학지원처장이 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상별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학생상별에 관한 사항
3.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 안건에 따라 해당 학부장 및 지도교수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포 상

제7조(대상) 재학생 중 모범이 되는 학생으로 다음 각 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1. 우등상

가. 학기우등생

- 18학점 이상 이수자로 성적평점평균이 3.50 이상인 자
- 17학점 이수자로 성적평점평균이 3.70 이상인 자
- 15학점 내지 16학점 이수자로 성적평점평균이 3.90 이상인 자

나. 졸업우등생

- 최우등생 : 이수한 전교과목의 성적평점평균이 4.00 이상인 자
- 우등생 : 이수한 전 교과목의 성적평점평균이 3.70 이상인 자

2. 공로상 : 사상이 건전하고 지도능력이 탁월하며 학교발전에 기여하고 학생 자치활동에 공로가 현저한 자
3. 모범상 : 교내외에서 다른 학생에게 모범이 될 만한 선행을 하여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
4.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8조(발의) 제3조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리부서에서는 해당 학부장 및 지도교수의 협조를 받아 포상과 징계를 발의할 수 있다.

제4장 징 계

제9조(대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된 절차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학생
2.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학생
3. 학사행정에 지장을 초래한 학생
4. 기타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학생

제10조(구분)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하며 근신은 1주일이내, 유기정학은 15일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학생은 무기정학 이상의 중징계에 처분한다.

제11조(발의) 제9조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교학지원처장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학생상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1. 사건 경위서 1부
2. 본인의 진술서(경우에 따라서 생략할 수 있음) 1부
3. 학부장 및 지도교수 의견서 1부

제12조(특별지도 및 권리의 정지) 징계를 받은 학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특별지도를 받거나 권리가 정지된다.

1. 제적 이외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징계기간 중 분담지도교수 및 학부장의 계속적인 특별지도를 받아야 한다.
2. 근신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수업이외의 모든 학생활동의 참여가 금지된다.
3. 근신이외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해제되는 날까지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된다.
4. 제적 이외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이 징계기간 중 다시 학칙 및 제 규정을 위반하여 개

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제적처분 한다.

제5장 심의절차

제13조(심의절차) 포상 대상자와 징계 대상자에 대한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포상대상자

- 가. 교학지원처장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 상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 나. 제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자 선발은 건학이념 구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방법을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6. 2. 11.>

2. 징계대상자

- 가. 교학지원처장은 징계 대상자가 발생되면 즉시 사건경위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 상정한다.
- 나. 위원회는 학생의 입장을 보호하고 정확한 징계를 위하여 해당 학생의 의견을 청취한다(필요시 지도교수의 참고발언을 청취 할 수 있다).
- 다. 해당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할 시는 소명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단, 출석을 원치 않을 시 서면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라.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심의가 회부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징계해제) ① 지도교수 또는 학부장은 무기정학중인 학생이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학생의 지도결과 보고서와 징계해제에 대한 의견서를 교학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학지원처장은 징계해제 의견서를 접수하면 위원회의 징계해제에 대한 심의를 받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징계를 해제할 수 있다.

제15조(통보) 교학지원처장은 포상 및 징계에 대한 사실을 공고하며 이 사실을 관계부서와 학부모 및 본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징계의 감면) 총장은 징계대상자 또는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에 처벌을 감면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8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규정은 2026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제13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5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부터 적용한다.